

# 「정릉1동커뮤니티센터」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  
(어르신·장애인복지과)

#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일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‘정릉1동 커뮤니티센터’를 운영하고 있는 『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』 과의 위탁계약이 2023.12.31. 종료됨에 따라, ‘정릉1동 커뮤니티센터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대상 현황

시설명	위탁운영체	시설현황				
		센터장	소재지	시설규모	개소일	위탁기간
정릉1동 커뮤니티센터	아름다운정릉1동 사람들협동조합 (조합장:이건평)	김혜진	성북구 정릉로38가길 6(정릉1동)	대지면적:271㎡ 규모: 지상2,3층 (연면적:233.53㎡) * 지상1층 경로당은 위탁에서 제외	2014.1.1	'21.1.1.~ '23.12.31.

나. 위탁기간 :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

다. 위탁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,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·의결

## 라. 위탁사업의 범위

-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① 지방자치법

##### 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##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# 제5조 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### 제7조(수탁기관 선정)

-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(이하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[제6조에서 이동, 2013.3.28.]

### 제10조(계약체결 등)

-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. (개정 2016.12.29.)
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기간
3.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
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(개정 2020.12.31.)
6.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(개정 2016.12.29, 2020.12.31.)
7. 예산지원 내용 (개정 2020.12.31.)
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(개정 2020.12.31.)
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(개정 2016.12.29.)

-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. (신설 2016.12.29.)

[제9조에서 이동, 2013.3.28]